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52 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고동진 • 권영세 • 안상훈

박충권 · 강승규 · 박준태

백종헌 · 성일종 · 서일준

박덕흠 • 김성원 • 송석준

안철수 · 김종양 · 주호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,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도검·총포 중 가스발사총·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,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2조, 제16조 및 제22조).

법률 제 호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 중 "제1호 및 제2호의 총포"를 "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도검·총포 중 가스발사총·화약류 및 석궁: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
- 4.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: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6조의 제목 "(총포 소지허가의 갱신)"을 "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허가의 갱신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·제2항"으로 한다.
 -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 다.

제22조제5항제2호 본문 중 "5년마다"를 "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

청 전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포·도 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이법 시행일에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햀 개 정 안 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의 소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의 소 지허가) ① 제10조 각 호의 어 지허가) ① -----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을 소 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-----제1호부터 제3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 호까지의-----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 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도검·총포 중 가스발사총 3. 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 자충격기 및 석궁: 주소지를 ·화약류 및 석궁: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관할하는 경찰서장 4.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: 주소 <신 설> 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총포 소지허가의 갱신) 제16조(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

(1)	(생	략)
(\mathbf{L})	\ O	-7/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2조(교육의 실시) ① ~ ④ 저 (생 략)
 - ⑤ 총포·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: 5년마다. 다만,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.
 - ⑥ (생략)

<u>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 소지</u>
허가의 갱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2조에 따라 도검ㆍ화약
류・분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
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
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
갱신하여야 한다.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④</u> 제1항·제2항
∥22조(교육의 실시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⑤
1. (현행과 같음)
2
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
청 전까지

⑥ (현행과 같음)